

# 朝鮮王朝의 邑誌研究

金 田 培

## 〈目 次〉

- |                |                   |
|----------------|-------------------|
| I. 序 論         | IV. 邑誌의 性格 및 重要內容 |
| II. 官撰地志의 編纂經緯 | V. 邑誌의 活用方案       |
| III. 邑誌編纂經緯    | VI. 結 論           |

## I. 序 論

朝鮮王朝의 邑誌는 地方 各邑의 地志인 同時에 地方史이며, 行政의 重要根據資料로도 活用되었다. 特히 韓末에 있어서는 하나의 政策資料로서의 比重이 컸던 行政事例集이기도 하다.

從來의 國學研究란 中央政府 中心의 研究 爲主이었고 地方에 關한 研究는 資料의 不足으로 거의 度外視되었음을 勘案하면 地方志가 지니고 있는 史料의 價値는 더욱 至大하게 評價되는 것이다.

더우기 方志인 邑誌란 어떤 特定地域에 있어서의 人間과 自然과의 關係에서 빚어진 歷史의이고 發生的인 諸般事項 即 沿革·戶口·産業·軍事·交通·通信·學校·人物·古蹟·風俗 및 諸般 行政·經濟·社會制度 등에 關한 事項이 昭詳히 收錄되어 있어, 이에 關한 研究에 邑誌가 지니는 資料의 價値는 매우 크다. 또 어느 歷史의인 時點에서 그 地方의 어떤 狀況을 研究하는데 있어서도 必要 不可缺한 資料로서의 性格을 지니는 것이다.

이러한 邑誌가 지금까지 많이 傳하고 있음은 참으로 多幸한 일이나,

이 重要한 邑誌의 資料의 價値가 忘却된 채, 小數의 學者에 依해서만 部分的으로 利用되었을 뿐, 積極的으로 活用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 그 數量과 所在 조차도 完全히 把握되지 못하여 이의 綜合的인 調査가 時 急하게 要請되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本 研究는 우선 重要 官撰地志 編纂經緯를 그 性格과 體例에 따라 4段階로 區分考察하고, 그것이 邑誌編纂에 미친 影響을 究明함과 아울러 比較的 該資料를 包括的으로 收藏하고 있는 藏書閣과 奎章閣의 現存邑誌를 中心으로 編纂經緯 및 內容을 살펴서, 諸般制度史의 研究를 爲한 活用方案을 講究하므로써 邑誌의 史料의 價値를 浮刻시키고자 한다. 또한 先學들에 依해 全혀 研究되지 않은 部分을 究明함과 아울러 從來 發表된 것중 錯誤가 있는 部分에 對하여도 檢討하여 이를 是正하고자 한다.

## II. 官撰地志의 編纂經緯

朝鮮王朝의 官撰地志 編纂經緯를 그 性格과 體例에 따라 四段階로 區分하였으니, 「新撰八道地理志」의 編纂事業에 着手하여 「慶尙道地理志」를 거쳐 「世宗實錄地理志」가 編成된 때 까지를 第一段階, 「八道地理志」의 編纂에 着手하여 「慶尙道續撰地理志」와 「東國輿地勝覽」을 거쳐 「新增東國輿地勝覽」의 出刊을 보게된 때 까지를 第二段階, 「東國文獻備考」의 編纂에 着手하여 「增訂文獻備考」를 거쳐 「增補文獻備考」가 印出된 때 까지를 第三段階, 高宗朝의 各郡邑誌의 編纂事業을 第四段階로 하였다.

이를 좀 詳述하면, 第一段階 地志編纂事業은 「世宗實錄地理志」가 根幹이 되며 그 體例는 地理·歷史·産業·軍事·交通 등이 地域別로 簡畧하게 叙述된 自然·人文地理의 典章類이다.

第二段階 地志編纂事業은 「輿地勝覽」이 根幹이 되며, 그 體例는 「世

宗實錄地理志』와 大同小異하나 內容에 있어서 題詠·人物·忠義·孝烈 校院과 그동안의 變動事項 등을 追加하여 崇儒文治의 地方的 特徵을 具顯하고 또한, 八道總圖를 비롯한 道別地圖를 添附하여 地理書로서의 性格을 비로소 具備하였다.

第三段階 地志編纂事業은 從來의 典章之書格 體例를 大幅 改편하여 會通之書格인 文獻備考의 體例로 編纂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 體例에 있어 前者는 地域別 아래에서 項目別로 別리고 있으나 後者는 主題中心으로 編成하고 있음이 그 特徵이다.

第四段階 地志編纂事業은 高宗朝의 各郡邑誌가 中心이 되며, 高宗 때에 5次에 걸쳐 大的으로 實施하였던 高宗 5年(同治 7年, 1868), 同 8年(同治 10年, 1871), 同 11年(同治 13年, 1874), 同 32年(1895) 및 光武 3年(1899)의 邑誌編纂事業이 바로 이에 該當된다. 邑誌라면 大體로 輿地勝覽의 體例를 본따고 있으나, 高宗朝에 編纂된 邑誌는 政策資料인 事例中心으로 엮었음이 그 두드러진 特徵이다.

#### A. 世宗實錄地理志 體例의 地志編纂事

##### ① 新撰八道地理志

本書는 世宗 6年(1424) 11月 大提學 卞季良에게 地志 및 州府郡縣의 沿革을 撰進하도록 下命 한데서부터 編纂事業이 비롯되었는데<sup>1)</sup>, 大提學 卞季良의 啓言에 依하면, 卞季良 自身과 卓愼, 尹淮, 孟思誠, 權軫 등이 編纂을 擔當하여 世宗의 下命이 있은지 8年만에 비로소 그 完成을 본 것이 된다<sup>2)</sup>. 同書는 現存本이 없어 매우 遺憾스러우나 朝鮮王朝 最初의 官撰地志라는 點에서 그 比重이 크며, 또 15世紀 朝鮮의 地理를 一目瞭然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世宗實錄地理志」의 底本이었다는 점

1) 世宗實錄 卷26, 6年甲辰11月丙戌條.

2) 上揭書, 14年壬字正月己卯條.

에서 크게 評價된다.

## ② 慶尙道地理志

本書는 世宗6年 卞季良에게 「新撰八道地理志」의 編纂을 下命한데서 부터 附隨되는데, 同年(1424, 永樂23年)甲辰 12月<sup>3)</sup> 戶曹에 命하여 各道의 府州郡縣의 地志를 編纂하여 春秋館에 轉送 하도록 하였다. 同書의 序文에 보면<sup>4)</sup> 地志編纂이 본시 戶曹의 所管이었음을 알 수 있고, 그 內容은 州府郡縣의 歷代官號, 邑名, 沿革 및 邑의 離合 過程을 仔細히 推覈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令戶曹移關各道」라는 文句로 보아, 全國 八道에 同一한 內容의 指示를 同時에 내렸음을 알 수 있다.

翌年(世宗7年, 洪熙元年) 6月 3日 禮曹가 다시 受敎하였는데, 이번에는 進一步해서 일정한 規式에 따라 地志를 編纂하도록 各道에 再指示하였던 것이다<sup>5)</sup> 이때에는 本書 編纂의 主管이 福曹로 移管되고, 한편 現存하는 慶尙道地理志로 미루어 생각하면, 當時에 指示된 規式은 12項目에 達하며 記載例까지 詳細하게 列擧하여 通牒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通牒에 따라 慶尙道地理志는 滿1年後인 世宗 7年 12월에 完成되었다<sup>6)</sup>.

이와 同時에 「慶尙道地理志」와 같은 各道(8道)의 地理志가 作成되었음이 分明하나, 現在에는 「慶尙道地理志」만이 傳存한다. 또 그 當時 原本은 春秋館에 送付하고, 副本 一部를 作成하여 慶尙監營에 備置하였음을 序文에서 밝히고 있다<sup>7)</sup>. 現存하는 慶尙道地理志는 慶尙監營에 備置하였던 副本이며, 그것은 本書의 序文 끝의 餘白에 「本營慶州府置」라 大書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慶尙監營 慶州府에 備置하였던 副本이라는 것이 考證될 뿐 아니라 敬齋, 晉陽世家, 河淵, 淵亮 등의 印記가 있어 後

3) 慶尙道地理志 序.

4) 上揭書.

5) 上揭書.

6) 上揭書.

7) 上揭書.

寫本이 아닌 眞本임을 알 수 있다.

### ③ 世宗實錄地理志

「世宗實錄의」編纂은 同書의 附錄에 依하면 鄭麟趾가 總裁官이 되어 文宗2年(1452) 3월에 始撰해서 端宗 2年(1454) 3월에 撰進하였다.

本 實錄은 모두 163卷으로 編成되었는데 1卷부터 127卷까지는 在位 32年間의 史實을 編年體로 엮었으며, 128卷부터 163卷까지는 여러가지 志를 添加하였고 卷末에 纂修官의 名單을 附錄하였다. 志中 148卷부터 155卷까지가 地理志이다. 이는 모두 8卷 8冊으로서 每道에 1卷씩 配當되었으며, 15世紀의 朝鮮地理를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歷史地理乃至는 人文地理의 寶典이라 할 수 있다. 同書는 世祖 11年(1465) 梁誠之의 啓에 依해서 鑄字로 印出하기 始作하여<sup>8)</sup> 成宗 4年(1473) 癸己에 完了되었으며<sup>9)</sup>, 太白山本과 鼎足山本이 現存하고 있다.

또 世宗實錄地理志는 新撰八道地理志를 底本으로 해서 作成한 것이며 그 內容은 新撰八道地理志의 바탕에 그 동안의 變動事項만을 追加한 것이다<sup>10)</sup>.

新撰八道地理志가 世宗實錄地理志의 底本임을 考證하기 爲하여 兩書에 收錄된 人口와<sup>11)</sup> 慶尙左·右道の 水軍都安撫處, 守禦處의 諸般事項<sup>12)</sup>을 比較한 바 같은 內容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以上에서 「世宗實錄地理志」의 內容과 「慶尙道地理志」의 內容이 類似함을 알 수 있으니, 世宗實錄地理志는 그 序에서 밝힌 바와 같이 新撰八道地理志를 底本으로 했음이 더욱 分明해졌다.

慶尙道地理志를 纂成하여 春秋館에 送付한 것이 世宗 7年(1425)이며,

8) 文獻備考, 藝文考3, 史記, 「世祖11年」國朝寶鑑卷13, 世祖朝4, 12丁(丙戌11年11月)條.

9) 成宗實錄 卷32, 4年癸巳7月甲午條.

10) 世宗實錄, 卷148 序.

11) 李燦, 韓國地理學史, 韓國文化史大系Ⅲ(科學·技術史), 1970. pp. 697—8 (人口比較表 參照).

12) 金田培, 朝鮮朝의 邑誌研究, 碩士學位論文(1972).

權軫, 申檣 등이 新撰八道地理志를 撰進한 것이 世宗 14年(1432)이니, 慶尙道地理志는 世宗 6年(1424) 卞季良에게 地志 및 州府郡縣의 沿革을 撰進토록 下命한 다음해에 完成을 보았고, 新撰八道地理志는 慶尙道地理志가 完成된지 7年後에 編成되었으며, 世宗實錄은 端宗 2年(1454)<sup>13)</sup>에 撰進되었으니 慶尙道地理志가 編成된지 29年後에 이루어졌다.

한편, 「新撰八道地理志」가 傳하여지지는 않고 있으나, 現存하는 「慶尙道地理志」와 世宗實錄地理志의 編纂體制 및 內容으로 미루어 보아, 그 收錄範圍의 大綱은 把握할 수 있으리라 본다.

三國史記地理志가 國土의 位置와 沿革에 置重되어 地名의 說明과 羅列에 不過한 反面 上擧 各 地理書들은 自然과 人文兩面に 걸친 詳細한 記錄으로서, 15世紀 韓國을 研究하는데 하나의 重要資料이나, 地理的인 여러 事實을 羅列하였을 뿐, 相互關係나 原因을 밝히지 못하였으므로, 亦是 百科辭典式 範疇를 벗어나지 못한다<sup>14)</sup>.

그러나 建國以來 國勢가 安定되고 國土가 確定됨에 따라, 四界의 區分과 州郡沿革의 變更過程 및 諸般行政資料를 蒐集하여 集大成하였음은 當時 國力의 實體를 把握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 B. 輿地勝覽 體例의 地志編纂事業

### ① 八道地理志

世宗實錄地理志가 完成된 翌年인 世祖元年(1455)부터 地志編纂은 다시 繼續되었으니, 이미 端宗 2年(1454)에 撰進된 世宗實錄地理志의 闕略된 未備點을 增補하기 爲한 作業에서부터 始作되었는데, 世祖元年 8月에 集賢殿 直提學 梁誠之에게 地理志의 編纂과 地圖의 作成을 命하여<sup>15)</sup> 着手된 本書는 成宗 9年(1478) 戊戌 正月 6日 梁誠之에 依해 撰進

13) 端宗實錄 卷11, 2年甲戌3年辛巳條.

14) 李燦, 前揭論文, p. 700.

15) 世祖實錄 卷2, 元年乙亥8月乙卯條.

되었다<sup>16)</sup>. 當時 本書는 印出되지 못하고, 그後 編成된 東國輿地勝覽에 吸收되었다. 또 成宗 13年(1482) 南原君 梁誠之의 上疏에 依하면 八道地理志에는 8道の 州郡圖와 8道の 山川圖 등이 挿入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7)</sup>.

本書는 아직 筆者가 接하지 못하였으나 後述할 慶尙道續撰地理志에 依하여, 그 內容의 一部를 斟酌할 수 있고, 高麗史地理志도 梁誠之의 所撰이니<sup>18)</sup>, 이 두 資料에 依하여 八道地理志의 收錄範圍와 內容을 넉넉히 推察할 수 있다.

## ② 慶尙道續撰地理志

朝鮮王朝의 地志編纂은 歷朝에 걸친 繼續的인 事業이었다. 上述한 바도 있거니와, 朝鮮朝 初期의 地志作業이 世宗實錄地理志의 編成으로 一段 落되었으나, 未盡한 點을 補完하기 爲하여 世祖元년에 梁誠之에게 地志編纂을 命하였고, 다시 睿宗元年(1469) 正月 諸道에 未盡한 事項을 補充하라는 內容의 綸音을 내렸다<sup>19)</sup>.

이 慶尙道續撰地理志는 慶尙道地理志의 續撰으로 睿宗元年(1469) 3月에 編成되었으니, 綸音이 내린지 3個月만에 完成된 것이며, 同書는 5部가 作成되어, 1部는 京師에 轉上하고, 4部는 各各 四界 卽 慶州道, 慶尙道, 安東道, 晉州道에 分置하였던 바<sup>20)</sup>, 現存 唯一本이라 認定되는 서울大學校 所藏本은 4個의 副本가운데 하나로 생각된다.

八道地理志의 編纂을 命한 것이 世祖元年(1455)이고, 諸道에 「續撰前志」하라는 綸音을 내린 것이 睿宗元年(1469)이니 八道地理志를 着手한지 14年後의 일이요, 同書의 完成은 成宗10[9]年(1478) 戊戌에 이루어졌으니 着手한지 23年만에 成編되었고 綸音을 내린지 9年만에 이루어진

16) 東國輿地勝覽 序.

17) 成宗實錄 卷138, 13年壬寅 2月壬字條.

18) 上揭書.

19) 慶尙道續撰地理志 序.

20) 上揭書.

셈이다.

### ③ 東國輿地勝覽

本書의 編纂은 成宗 7年(1478) 12월에 下命되었다. 卽 東國輿地勝覽은 梁誠之의 八道地理志에 東國文士의 詩文을 添載하는 作業에서부터 着手되었는데, 盧思愼·李坡·待居正이 三國史節要를 進하자, 成宗이 그 자리에서 盧思愼등에게 東國文士의 詩文을모아 梁誠之 所撰의 地理志(註. 八道地理志)에 添載하도록 하라고 下命하였다<sup>21)</sup>.

한편, 待居正의 「東國輿地勝覽」序에는 同書의 編纂이 成宗10年[9年] 戊戌에 着手된 것으로 記述하였으나<sup>22)</sup>, 實은 成宗7년에 이미 王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後 本書는 成宗 12年(1481) 辛丑 4월에 完成되었으며, 京都의 앞에 摺圖를 收錄하고 各道の 앞에 各各 地圖를 붙여서 兩京 8道の 體制로 엮어 50卷을 繕寫해서 進獻하였다<sup>23)</sup>. 이는 成宗實錄 13年 記事에도 同書를 撰進한 翌年에 粧潢이 完了되었음을 말하여 준다<sup>24)</sup>. 그러나 國朝寶鑑<sup>25)</sup>과 增補文獻備考에는 成宗 11年 11월에 纂成된 것으로 記錄되어 있어, 同書의 序와 1年 差異가 있으므로 이를 究明하여야 되는데, 國朝寶鑑을 參照하면, 成宗 11년에 完成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sup>26)</sup>, 그 內容中 「…命盧思愼等攷其例成書」와 「賜名輿地勝覽印布中外」라는 文句로 미루어보아 「成宗十一年 十一月」은 印刊을 上裁받은 年月을 말함이며<sup>27)</sup>, 大明一統志의 例를 본따서 成書하여 實際로 王에게 進獻한 것은 5個月後인 成宗 12年 4月로 보아야 妥當하다. 그러나 그 當時의 印本을 찾아볼 수 없어 印刊與否에 對하여는 確言할 수 없다.

21) 成宗實錄 卷74, 7年丙申12月兩成條.

22) 東國輿地勝覽 序.

23) 上揭書.

24) 成宗實錄 卷239, 13年壬寅 3月甲午條.

25) 國朝寶鑑 卷16, 20丁.

26) 增補文獻備考 卷243, 藝文考2, 歷代著述5丁.

27) 前簡恭作編, 古朝册譜, 東洋文庫叢刊第11.

이리하여 50卷으로 된 巨帙의 東國輿地勝覽이 一旦 撰進되었으나, 그 뒤 改修作業이 繼續되어 成宗 17年(1486) 12月에는 金宗直 등에 의한 第一次 讎校가 完了되어 5卷이 追加된 55卷으로 增補되었는 바<sup>28)</sup> 이것은 成宗實錄 18年 記事<sup>29)</sup>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金宗直이 校正이 完了되었음을 啓하자<sup>30)</sup> 「命印新撰輿地勝覽」<sup>31)</sup>이라 한 것으로 보아, 이것이 東國輿地勝覽의 第一次 校正本임을 立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뒤에도 同書의 改修作業은 계속 논의되어 同年 4月 王은 金宗直의 啓에 따라 差誤가 있는 部分을 改正하도록 指示하였다<sup>32)</sup>.

讎校作業은 繼續되어, 燕山君 3年(1497)에도 成侃, 李德崇, 任士洪 등이 讎校의 命을 받고 景福宮의 校書館에 開局 施行하였으며, 이는 燕山君 3年에 着手하여 同 5年(1499) 10月에 完成되었는데, 이것이 第二次 校正作業이 된다<sup>33)</sup>.

以上에서 叙述한 것을 整理해 보면, 成宗 7年(1476) 7月 盧思愼에게 東國文士의 詩文을 梁誠之 所撰의 地理志에 添載할 것을 命한 以來 成宗 11年에 完成하여 同 12年(1481)에 徐居正등이 50卷을 撰進함으로써 一旦 編纂이 完了되었으며, 다시 金宗直등이 成宗 17年에 讎校를 加하여 同 18年(1487)에 進獻한 것이 第一次 校正本이고, 그 뒤 成侃등이 燕山君 3年(1479) 刪補에 着手하여 同 5年(1481)에 完成한 것이 第二次 校正本이 된다.

그러나 原本(五十卷)은 「印布中外」<sup>34)</sup>라 하였으나 傳하여지지 않고 第一次 校正本 55卷인 乙亥字本 一册<sup>35)</sup>이 傳하고 있으며, 第二次 校正本

28) 東國輿地勝覽 跋.

29) 成宗實錄 卷200, 18年丁未 2月戊辰條.

30) 上揭書, 18年丁未二月庚辰條.

31) 上揭書, 同日條.

32) 上揭書, 卷202, 18年丁未 4月辛卯條.

33) 東國輿地勝覽 跋.

34) 國朝寶鑑 16卷, 20丁.

增補文獻備考 卷243, 藝文考二, 歷代著述

35) 盧思愼 등 受命撰[1481], 乙亥字本 1册(卷 37·38) 國立中央圖書館 藏.

도 亦是 一冊<sup>36)</sup>이 傳하고 있을 뿐이다.

東國輿地勝覽이 傳하여지지 않는 理由는 오랜동안 兵火 등의 災害로 因하여 逸失된 것도 많고, 또 輿地類의 圖書는 一般에게는 別로 必要한 資料가 아니었으므로, 發刊部數가 적었으리라는 推測도 可能하나, 그 보다는, 輿地圖書類의 私藏을 禁止했던 事實에 基因한다고 생각되며<sup>37)</sup>, 또 燕山君 11年 7月에는 正식으로 輿地勝覽類圖書의 私藏을 禁止시켰으니<sup>38)</sup>, 이라고 보면 널리 世傳되지 못했다고 보아야 妥當할 것이다.

#### ④ 新增東國輿地勝覽

本書의 編纂은 中宗 23年(1528)부터 始作된다. 即 東國輿地勝覽의 1·2次 讎校가 容了된 後에도 增補作業은 繼續되었으니, 中宗 23年에 이르러 大提學 李荇에게 東國輿地勝覽의 舊帙(註·東國輿地勝覽)에 補遺를 添錄하여 新增으로 하고 別途로 序文을 作成하여 添錄하라고 下命한데서부터 本書의 編纂이 着手되었으며<sup>39)</sup>, 官制의 變易, 郡縣의 移割, 孝烈之行, 詩文之華 등을 釐改하여 採錄하지 못한 것을 考覈 哀集하였던 것이다<sup>40)</sup>.

釐改作業은 繼續 推進되어 中宗 25年(1530) 8月에 5卷의 續編을 完成하였으나, 別錄으로 하면 統緒가 맞지 않기 때문에 東國輿地勝覽에 添入하여 中宗 26年(1530) 6月에 印出하였으며<sup>41)</sup>, 中宗實錄에도 中宗 27年 以前, 同 16年에 印出 되었음을 立證하여 주고 있다<sup>42)</sup>.

이렇게 해서 一旦 新增東國輿地勝覽은 印刊되었다. 그러나 同書에 對하여도 闕遺가 많다하여 그後 論議가 繼續되었으나, 增補刊行은 結實을

36) 盧思愼 등 受命撰[1481], 癸丑字本 1冊(卷 11·12·13). 서울大圖書館 藏

37) 成宗實錄 卷138, 13年壬寅 2月壬子條.

38) 燕山君日記 卷58, 11年乙丑 7月戊戌條.

39) 中宗實錄 卷63, 23年戊字8月己酉條.

40) 新增東國輿地勝覽 跋.

41) 上揭書 跋.

42) 中宗實錄卷72, 27年壬辰正月癸亥條.

보지 못하고 未遂에 그치고 말았다. 本書에 對한 修補論議는 中宗 27年 부터 始作되며<sup>43)</sup>, 同 2月에는 中宗께서 新刊輿地勝覽에 宗親府의 記載가 漏落되었다 하여 改刊時에는 續載하는 것이 可하다고 指示한 事實도 있다<sup>44)</sup>. 또 肅宗 13年에 이르러 金錫胃에게 增補開刊의 業務를 主管하도록 한 바 있고<sup>45)</sup>, 肅宗 25年 左議政 崔錫鼎이 同書의 增補를 奏請하였는데, 王의 載可를 받았을 뿐<sup>46)</sup> 未遂에 그치고 말았다<sup>47)</sup>. 肅宗 26年 3月<sup>48)</sup>과 6月<sup>49)</sup>에 同書의 續錄이 다시 論議된 바 있으나, 同 27年(1701)一旦 中止되었다<sup>50)</sup>. 이후 輿地勝覽의 增補作業은 아주 中止된 듯하며 다만 正祖 13年 奎章閣에 命하여 芸閣 擔當으로 諸道の 邑誌까지 夏聚하여 根本的으로 輿地勝覽을 續成하려 했으나, 이것 또한 未成에 그치고 말았다<sup>51)</sup>.

이와 같이 新增東國輿地勝覽은 中宗 23年 李荇이 東國輿地勝覽의 添錄을 撰集하기 始作한데서부터 비롯되어 中宗 26年 6월에 5卷의 添錄을 成編하므로써 一旦 完了되어 印刊한 바 있다. 그 後 本書에 對하여는 刪補作業만 間歇的으로 繼續되었을 뿐 印刊을 보지 못하였으며, 正祖 13年(1789)까지 增補作業의 흔적은 보이나 成冊되지 못하였다. 이즈음의 地志編纂事業은 英祖 45年부터 纂修하기 始作한 文獻備考의 編纂事業에만 主力하였을 것이 分明하다.

### C. 文獻備考 體例의 地志編纂事業

第三段階 地志編纂事業은 東國文獻備考 編纂의 着手에서부터 增補文獻備考의 出刊까지를 말하며, 이것은 英祖 45年(1769)에서 隆熙 2年(1908)

43) 上揭書, 27年壬辰正月乙卯條.

44) 上揭書, 27年壬辰二月己卯條.

45) 肅宗實錄 卷8, 5年己未 3月癸亥條.

46) 上揭書 卷32, 25年己卯 6月丙午條.

47) 增補文獻備考 卷243, 藝文考2, 歷代著述. 「肅宗 25年 命續編國朝寶鑑」條.

48) 肅宗實錄 卷34上, 26年庚辰 3月癸丑條.

49) 上揭書, 26年庚辰 6月丙寅條.

50) 上揭書 卷35下, 27年辛巳 11月甲辰條.

51) 正祖實錄 卷27, 13年巳酉 6月庚午條.

에 이르는 동안을 말한다.

東國文獻備考는 英祖의 命撰書이며, 同書는 3次に 亘하여 作業이 實施된 바 있다. 卽 英祖 45年(1769)에 着手해서 同46年(1770)에 13門 100卷을 一旦 完成하여 同年 8月에는 40冊으로 印刊하였는데, 이것이 第一次作業이며, 또 正祖 6年(1782)에 增補作業이 着手되어 同20年(1769)에 20考 240冊의 增訂文獻備考가 完成된 바 있는데 비록 印刊은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第二次作業이라 한다면, 隆熙 2年(1908)에 增補作業이 完了되어 15考 250卷을 成編하고, 50冊으로 印刊한 것이 곧 第三次作業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3次に 걸친 作業은 英祖 45年(1769)에 始作하여 隆熙 2年(1908)까지 139年餘에 이르는 동안의 地志編纂事業이라 하겠다.

以下에서 關係記錄을 中心으로 各地志의 編纂經緯를 概觀하고자 한다

#### ① 東國文獻備考

同書의 編纂은 英祖 45年(1769)부터 始作되는데, 이는 中國의 文獻通考를 模倣하여 刊行하도록 下命된 것이다<sup>52)</sup>. 同書의 編纂目的은 文獻通考의 體例를 模倣하여 會通之書의 編纂을 도모한 것이다<sup>53)</sup>. 이리하여 英祖 46年 5月에 13門 100卷의 東國文獻備考를 完成하였는데, 當時 編纂은 堂上 10人과 郎廳 9人이 擔當하였으며, 完成에 미처서는 時·原任 大臣으로 하여금 考正을 擔當하게 하였다<sup>54)</sup>.

또, 本事業은 王의 關心이 至大하여 督促이 매우 甚하였던 모양이었으며<sup>55)</sup>, 編纂方法은 몇개의 分野로 分類擔當하여 各分野別로 考正까지 完了되면 諸巨을 모아 參互 爛商하여 한 책으로 묶어 完成하고자 한 것이다.

一旦, 本書가 完成된 後에도 王은 經筵에서 餘暇가 있을 때마다 部分

52) 英祖實錄 卷113, 45年巳丑. 12月壬申條.

53) 增補文獻備考, 卷243, 藝文考2, 歷代著述, 10丁.

54) 英祖實錄 卷114, 46年庚寅正月己丑條.

55) 上揭書, 46年庚寅正月乙未條.

的인 檢討를 加하였던 것이다<sup>56)</sup>.

또, 王이 이렇듯 至大한 關心을 가졌던 事業이었으므로 申景濬들에게는 論功行賞도 있었으며 文獻通考의 編纂事業이 申景濬의 著書「疆域志」의 編纂을 契機로 發論成就 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57)</sup>. 따라서, 「東國文獻備考」가 文獻通考를 模倣하였으므로 從來의 地志書類와 體制는 다르지만 上記와 같은 編纂由來나 그 內容의 構成比로 보아 輿地考뿐만 아니라 다른 部門도 地志書와 매우 깊은 關聯性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經緯로 英祖46年 5월에 完成된 東國文獻備考는 同年 8월에 40冊으로 印刊됨으로써 備考 編纂事業의 全過程이 一段落되었으며, 여기에서도 監印에 功이 있는 者들에게는 應分の 賞賚가 있었다<sup>58)</sup>. 특히 備考의 編纂이 申景濬의 「疆域志」에서 基因된 것으로 보아 輿地考의 編纂作業은 尙當 當代의 實學者 申景濬에게 專擔시켰으리라고 足히 미루어 생각할 수 있으며, 本書가 從來의 地志書類와 같이 純粹한 地志專門書가 아니라 할지라도 「輿地考」一門만으로도 朝鮮王朝 歷代의 다른 地志編纂事業과 比有할 수 있는 偉業이라 할 수 있다. 特히 考證學的 地理學者였던 申景濬의 擔當으로 이루어졌다 함은 그 內容價値를 더 크게 評價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既往의 地志書의 內容이 地域別로 羅列되었음에 反하여, 同書는 主題別로 項目를 設定하여 一貫性있게 配列함으로써 體制上의 一大變革을 가져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輿地考가 가지는 一大特徵이다.

## ② 增訂文獻備考

同書는 東國文獻備考를 追補한 것인 바, 그 追補經緯를 簡單히 살펴 보면 增訂文獻備考는 正祖朝에 李萬運이 王命에 依하여 補續하였으며<sup>59)</sup>

56) 上揭書, 同年 5月乙丑條.

57) 上揭書, 同年 庚寅閏 5月辛酉條.

58) 上揭書, 同年 8月戊寅條.

59) 增補文獻備考 卷245, 藝文考4, 御製, 24丁. 「增補文獻備考246卷」條

正祖 6年(1782)에 追補作業이 着手되어 從前보다 7考를 增補하여 20考를 完成하였으나, 刊行하는데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正祖 6년에 着手한 備考 追補作業은 正祖 7年(1783) 實錄記事<sup>60)</sup>와 同王 11年(1787) 記事<sup>61)</sup>, 同王 14年(1790) 記事<sup>62)</sup>에 의하면 주로 李萬運이 作業을 主管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 作業은 正祖 6년에 着手한지 9年만인 同王 14년에는 一旦 成藁하였음을 알 수 있고, 總20考 246卷으로서 從前의 東國文獻備考보다 門目は 86編, 卷數는 146卷이 增補되었고<sup>63)</sup> 追補된 7考는 物異·宮室·王系·藝文·氏族·諡號·朝聘이었다<sup>64)</sup>. 備考의 追補作業이 上述한 바와 같이 正祖 14년에 一旦 完遂되었고, 增訂文獻備考가 李萬運에 依하여 一段落된 것은 正祖 20년에 이르러서였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群書標記에도 「閱十餘歲 編始粗完」이라고 하였듯이, 正祖 6년에 着手한 以後 十餘歲이면 同 14年 以後에도 계속 追補作業이 進行되었을 것으로 여겨짐에 그 間 도저히 追補와 完全無缺한 編成에는 이르지 못하였음이 뻔하기 때문이다. 正祖 20년에 7考가 追補된 240卷의 增訂文獻備考가 完成되어 그 卷秩과 書名이 確定되었다고 믿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도 「備考」의 追補作業은 여전히 進行되었다. 이에 關하여는 後述하겠지만, 이 때문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卷數에도 加減의 變動이 있었고, 寫本인채 刊布를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要컨대 東國文獻備考의 追補作業은 正祖 6년부터 李萬運의 主管下에 着手되어 同王 14년에 一旦 成藁는 하였으나 그 以後 同王 20년까지도 계속 追補作業이 進行되었던 것이다. 筆者는 李萬運에 依한 이 追補作業을 文獻備考의 修補로는 第一次 編纂事業으로 區分하여 보았다. 사실, 修補라고는 하지만 增訂文獻備考는 東國文獻備考보다 7考 86目 146

60) 正祖實錄 卷16, 7年癸卯 9月丁酉條.

61) 上揭書 卷24, 11年丁未 10月己亥條.

62) 上揭書 卷31, 14年庚戌 11月庚寅條.

63) 群書標記(全), 影印本, 學文社, 서울, 1970, p.337. 「增訂文獻備考 246卷 寫本」條.

64) 增訂文獻備考 卷243, 藝文考2, 歷代著述, 13丁, 「正祖二十年」條.

卷子나 增補된 것으로 보아 「備考」의 새로운 再編纂事業이었다고 보는 것이 妥當하다.

### ③ 增補文獻備考

文獻備考의 增補作業은 以後에도 繼續되었으니, 增補文獻備考의 編纂事業은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며 同事業은 憲宗 11年(1845)에 다시 設廳舉行되었다<sup>65)</sup>.

즉, 憲宗實錄 記事에 보면, 英祖 46年에 東國文獻備考가 처음으로 完成된 뒤, 正祖朝에 李萬運에 依하여 第一次 編纂事業이 이루어져 增訂文獻備考를 成藁하였음은 既述한 바와 같거니와, 그 뒤 50餘年이 經過하는 동안의 資料를 補充하기 爲하여 設廳舉行하였다. 여기에서 明確하게 究明해야 할 問題點이 提起된다. 그것은 李萬運이 文獻備考의 第一次 增補作業을 完了시킨 것이 正祖 14年이나 아니면 正祖 20年이나 하는 問題이다.

上述한 바 있거니와 正祖 6年에 追補作業에 着手한지 9年만인 同王 1年에 一旦 成藁시킨 것은 事實이지만, 前掲한 增補文獻備考의 正祖 20年條 記事와 같이, 正祖 20年에 이르러서야 東國文獻備考의 修補中인 增訂文獻備考가 完成된 것이 確實하다. 그런데 或者는 上記의 憲宗實錄 記事에만 根據하여 增訂文獻備考가 正祖 14年에 이미 完成된<sup>66)</sup> 것으로 錯覺하는 것은 是正하여야 할 點임을 指摘하여 둔다. 어쨌든 正祖 20年 以後에도 備考의 追補作業은 여전히 續行되었다. 그리하여 憲宗 11年 校書館에 開局하고 總裁官 以下 堂郎 43名의 文官을 差出하여 作業에 들어 갔으나, 이때는 作業을 完成하지 못하였다<sup>67)</sup>. 그런데 이때 總裁官 權敦仁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秋史 金正喜의 書信에 보면, 李萬運이 續行한 뒤에도 그 아들인 儒準이 再次 追補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全不成

65) 憲宗實錄 卷12, 11年乙巳正月壬申條.

66) 申奭鎬, 影印序, 增補文獻備考, 東國文化社, 서울, 1971.

67) 上揭書 卷243, 藝文考2, 16丁. 「憲宗十一年」條.

樣」하므로 몇 件의 實例까지 들면서 是正할 것을 付託하고 있다<sup>68)</sup>. 어떤 憲宗 11年의 續撰事業은 無爲로 돌아가고 高宗朝에 이르러 光武 7年(1903)에 다시 續纂事業이 舉行되었다. 즉, 高宗實錄<sup>69)</sup>과 增補文獻備考 藝文考<sup>70)</sup>에 보면, 文獻備考의 續撰을 爲하여 纂輯所를 設置하고, 特進官 朴容大가 그 堂上이 되어 光武 10年(1905) 12月 12日에 完成하여 朴容大가 文獻備考의 續撰을 告竣하고 校正事를 論議하였으며<sup>71)</sup> 本事業의 完成에 慎重을 期하기 爲하여, 朴容大, 趙鼎九, 金晚秀, 洪承穆, 李重夏, 朴齊純, 李址容 등을 校正堂上으로 差下하였다<sup>72)</sup>. 또 同月 20日에는 朴齊純을 校正總裁로 任命하여 校正全體를 責任지게 하였다<sup>73)</sup>.

이러한 節次를 거쳐 隆熙 2年(1908)에 巨帙인 增補文獻備考 250卷 50冊이 刊行되었으니, 純宗實錄 隆熙 2年 記事에 「增補文獻備考成」<sup>74)</sup>이라 되어 있고 또 增補文獻備考 御製後序에도 「…隆熙二年 一月…」이라 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 D. 事例中心 體例의 地志編纂事業

第四段階 地志編纂事業은 高宗朝의 各郡邑誌 編纂事業을 말하나, 이에 對하여는 다음 章에서 詳述하겠으므로 本章에서는 論外로 한다.

### Ⅲ. 邑誌編纂經緯

#### A. 邑誌에 對한 概觀

邑誌는 撰者에 따라서 官撰邑誌와 私撰邑誌로 區分할 수 있다. 그러

68) 院堂集 卷1, 52丁. 「答彝齋權敦仁問」條.

69) 高宗實錄 卷43, 光武7年 8月日 23日條.

70) 增補文獻備考, 藝文考2, 歷代著述, 18丁, 「光武七年」條.

71) 高宗實錄 卷47, 光武10年 12月 12日條.

72) 上揭書, 10年 12月 13日條.

73) 上揭書, 10年 12月 20日條.

74) 純宗實錄 卷2, 隆熙 2年 7月 1日條.

나 私撰邑誌라 하더라도 그 撰者가 邑守로 在職하고 있을때 編纂한 것이므로 私撰邑誌와 官撰邑誌로 區分함은 無意味하며 모두 官撰邑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邑誌는 邑號에 따라 「牧邑誌」 「府邑誌」 「都護府邑誌」 「郡邑誌(郡誌)」 「縣邑誌(縣誌)」 「鎭營誌」 「牧場誌」 등으로 呼稱되기도 하였으며 建陽元年の 地方職制 改正以後 邑誌의 名稱은 「郡誌」로 單一化했다.

現在邑誌를 時代別, 地域別로 살펴 본 바, 우선 時代別에 있어서는 壬亂以後의 것 뿐이고, 그중에서도 高宗朝, 光武年間の 次序로 傳存되고 있으며, 特히 高宗朝의 것은 甲午更張 直後의 것이 首位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細部的인 統計를 算出하여 보면 各各 다음 表와 같다.

時代別	邑誌數
壬亂以前	○
壬亂以後	1,637
英祖以前	58
正祖年間	21
純祖~哲宗年間	58
高宗元~同11年間	147
高宗12~建陽元	272
光武年間	238
隆熙年間	(2)
年紀未詳	843
總計	1,637

또 傳存邑誌를 地域別로 보면 湖南 邑誌가 414種(約 25.3%), 嶺南 邑誌가 346種(約 21.6%), 忠清道 邑誌가 204種(約 12.5%), 京畿道 邑誌가 144種(約 9%)으로서 湖南·嶺南 邑誌가 가장 많이 傳存하고 있다.

B. 邑誌의 編纂經緯

① 「新撰八道地理志」와 邑誌編纂

新撰八道地理志가 朝鮮朝 最初의 官撰地理志임은 이미 위에서 言及하였

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本書가 完成되기까지의 節次를 詳考하여 이것이 朝鮮朝 邑誌編纂의 起源이 되었으리라는 假定을 定立하여 보고자 한다.

即, 本地理志는 地志 및 州府郡縣의 沿革을 撰進하라는 王命에 따라着手된 것으로서, 各道에 指示하여 一定한 規式에 따라 그 道の 州府郡縣의 地志를 轉上하도록 하였는 바, 이러한 節次에 依하여 完成 轉上된

것이 바로 現存하는 慶尙道地理志이며, 또한 道誌를 編纂하기 爲하여서도 반드시 州府郡縣으로부터 諸般資料의 蒐集이 不可避하였을 것이므로 이것이 邑誌編纂의 始初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 事實은 當初 州府郡縣의 沿革을 編纂하도록 指示한 點에 의해서 넉넉히 推料되거니와, 「地志及州郡沿革一體事也」<sup>1)</sup>라고 한 卞季良의 啓를 보아도 如實히 뒷받침 되어진다고 믿어진다.

따라서 八道地理志의 編纂節次는 그 첫 段階로, 各州府郡縣의 邑誌를 編纂하였을 것이고, 다음 段階로 그 邑誌를 撰集修正하여 道誌를 編輯하였을 것이며, 그 道誌를 모아 最終적으로 體系있게 整理한 것이 바로 「新撰八道地理志」라 볼 수 있으니, 一國의 總志는 最下 行政單位인 邑誌가 그 梗槩를 이루고 있다 하겠다<sup>2)</sup>.

## ② 八道地理志와 邑誌編纂

世宗實錄地理志를 補充하기 爲하여 地理志의 編纂과 地圖의 作成에 着手한 것이 「八道地理志」의 編纂作業이며, 이 作業의 一環으로 諸道에 繪音을 내려 「續撰前志」하도록 한 것이 慶尙道續撰地理志이다. 同書도 慶尙道地理志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各州府郡縣의 邑誌를 모아 成編되었으리라 믿어지나 記錄에서 찾지 못했음은 遺憾이다. 또 東國輿地勝覽의 修正過程에 있어서 「…其山川志 可謄送監司 以待回答改正」<sup>3)</sup>라고 한 金宗直의 啓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 中宗 23年 新增東國輿地勝覽의 編纂을 命할 때에도 「…輿地勝覽添錄撰集事 旣行移于各道矣…」<sup>4)</sup>라 하여 地志編纂과정을 設明해 준다. 더우기 增補文獻備考에 「肅宗朝(36年) 崔錫鼎啓曰 昨年臣以輿地勝覽續撰事定奪之後 分付外方 各邑冊子 幾盡上來…」<sup>5)</sup>라 한것을 보면 以上에서 叙述한 內容이 한층 더 뒷받침 되어지리

- 1) 世宗實錄 卷26, 6年甲辰 11月丙戌條.
- 2) 龍城誌 序
- 3) 成宗實錄 卷202, 18年丁未四月辛卯條.
- 4) 中宗實錄 卷62, 23年戊子 8月己酉條.
- 5) 前簡恭作編, 前揭書.

라 믿어진다.

### ③ 英祖朝의 邑誌編纂

英祖朝의 地誌編纂作業은 「東國文獻備考」編纂을 中心으로 이루어졌다. 英祖 41년에 輿地圖를 印進하고, 邑誌를 蒐進하도록 弘文館에 命한 事實이 있는데, 이것은 東國文獻備考 編纂에 必要하였던 資料蒐集을 爲한 措處일 것이라 생각된다.

英祖 44年編「龍灣志」<sup>6)</sup>의 徐命善이 쓴 序를 보면

「餘至灣之四月 觀察使鄭公 令郡縣各獻其邑誌 灣之無志久矣…」

라 하였으니, 이것 또한 英祖 41年の 邑誌 蒐進命을 뒷받침 하여주는 資料라 할 것이다. 하여튼 乾隆 35年(英祖 46年)頃의 邑誌를 多少 찾아 볼 수 있음은 多幸한 일이며, 이 當時의 邑誌編纂에서 特記할 만한 것은 各邑마다 彩色地圖가 例外없이 添附되어 있다는 事實이다. 勿論 梁誠之의 八道地理志에도 各道の 地圖와 各邑의 總圖가 있었음을 記錄으로 알 수 있으나<sup>7)</sup> 이미 그 冊이 湮沒되어 內容을 確認할 수 없으니 考證의 資料로 쓰기에는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確實한 것으로는 英祖朝부터 光武年間까지 編纂된 邑誌에 아주 粗雜한 것을 除外하고는 例外없이 彩色地圖가 添附되어 있음을 實査할 수 있으니, 本格的으로 邑誌에 彩色地圖를 添附한 것은 아마도 英祖의 輿地圖 印進命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 ④ 正祖朝의 邑誌編纂

正祖朝의 地誌編纂事業은 東國文獻備考의 增補作業이 爲主였다. 그러나, 正祖十三年 實錄記事에<sup>8)</sup> 正祖朝에도 新增東國輿地勝覽의 續成作業에 着手하였던 듯하며, 그 方便으로 諸道の 邑誌를 蒐聚하도록 命하였다. 記事의 內容으로 보아, 同 續成作業은 未成으로 그쳤으나, 요컨대

「增訂文獻備考, 藝文考二, 歷代著述」.

6) 龍灣志 序

7) 成宗實錄 卷138, 13年壬壬寅 2月壬子條.

8) 正祖實錄 卷27, 13年己酉 6月庚午條.

諸道에 邑誌를 纂修 轉上하도록 指示했던 것만은 明白한 事實이다.

이 때에 이루어진 邑誌가 多少 現存하고 있음도 또한 多幸한 일이다. 이 當時의 邑誌에도 各邑의 彩色地圖가 例外없이 添附되어 있음은 하나의 特徵이라 볼 수 있다.

#### ⑤ 高宗初期의 邑誌編纂

奎章閣圖書와 藏書閣圖書 中에는 高宗初期(高宗 5~11年)에 編纂된 邑誌가 많이 保存되어 있는데, 이는 高宗 5年(同治 7年), 高宗 8年(同治 10年), 高宗 11年(同治 13年)에 成册된 것이 大部分이며, 卷首 또는 表紙에 「同治〇〇年 〇〇邑誌」라 明記되어 있어 成編年度를 正確히 알 수 있다.

이것들은 內容도 豊富하고 大概是 道別로 合綴되어 있어 檢索 및 管理가 容易하다. 特히 이때의 邑誌에도 邑마다 그 머리에 한결같이 彩色地圖가 添附되어 있음이 特徵이다.

#### ⑥ 高宗 31·2年間の 邑誌編纂

高宗 31·2年間에도 大的인 邑誌編纂作業이 實施되었음은 現存하는 邑誌로 미루어 보아 알 수 있으나, 위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어떤 必要에서 어떠한 過程으로 實施되었는지는 역시 자세히 밝힐 수 없으며 將次的 宿題로 미루어 두기로 하겠다.

그러나 이때에 各邑 및 議政府에서 編纂한 各道の 事例集이 奎章閣에 多數 現存하고 있음은 當時 事例中心의 邑誌編纂動機를 究明함에 있어 注目할 만한 事實이다.

#### ⑦ 光武 3年の 邑誌編纂

現存하는 邑誌中 그 數가 가장 많은 것이 光武 3年에 編纂된 各郡誌이다. 그것은 大韓 光武 3年 4月 26日 水曜日 皇城新聞」所載의 「邑誌修上」 題下에

「內部에서 十三道에 訓令하기를 各郡邑誌를 各其府로 都聚 修正하여 輸送本部하여 以爲乙覽케 하고 亦後存案하라신 旨意를 奉承하였기 茲

以訓令하노니 令到即地에 翰飾管下各郡하야 誌輿地圖를 各二件式 不日精書하야 令到後 三十日內로 趕速 修呈하라 하얏다더라」  
라 한 報道內容으로 뒷받침이 된다.

光武 3년에 成册된 邑誌中 藏書閣과 奎節閣에 現存하는 것이 많이 있다. 이때의 邑誌에도 彩色地圖는 例外없이 添附되어 있으나 그 技法은 자못 粗拙하다.

#### IV. 邑誌의 性格 및 重要內容

우리나라의 文化가 古代 中國文化의 影響을 많이 받았듯이 地志 또한 그러했을 것이니, 朝鮮朝 邑誌의 概念을 把握하기 爲하여 中國의 地志를 간단히 살펴보는 것도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古代中國의 地志란 方域, 山川, 風俗, 物産 등이 收錄된 書를 말하였는데 「元和郡縣志」(唐, 李吉甫撰, 元和八年, 813年)에 이르러 古蹟條가 追記되었고, 「太平寰宇記」(宋, 樂史撰)에 이르러서는 人物, 藝文條가 增記되었는 바, 이것이 곧 州縣志書의 濫觴이 되었다. 元明 以前에도 이 體例에 依據했으나 人物, 藝文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廢端이 있었다고 한다<sup>1)</sup>.

朝鮮朝에서는 「輿地勝覽」編纂時에 비로소 「大明一統志」<sup>2)</sup>와 「方輿勝覽」<sup>3)</sup>을 參考하여 從來의 地理書에 人物, 墳墓, 樓觀, 題詠條를 添入하였으며, 現存邑誌는 「輿地勝覽」의 體例를 模倣한 것이라 볼 수 있으니 朝鮮朝의 各邑誌의 內容構成에도 위의 「大明一統志」와 「方輿勝覽」의 影響이 間接적으로 미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地志는 總志, 都會志, 地方志, 名蹟志, 外國志, 紀行, 地史, 雜記로

1) 四庫全書總目 卷68, 史部24, 地理類一, 序.

2) 90卷, 明, 天順 5年, 1461.

3) 70卷, 宋, 祝穆撰.

分類할 수 있는데, 上記의 都會志와 地方志가 우리 나라의 各郡邑誌에 該當된다. 朝鮮朝 各郡邑誌의 序에도 각기 표현은 다르지만 大概「郡有志猶國之有史也」라는 뜻이 서술되어 있는 바, 이것은 一國에 歷史가 있드시 郡에도 志가 있다 함이니, 換言하면 郡志란 곧 그 郡의 地方史임을 뜻하는 것이다.

上述한 바와 같이 邑誌란 한 地方이라는 空間에 存在하거나 發生한 것에 關한 諸般事項을 記述한 冊이라 말할 수 있고, 또 「地志는 어느 局限된 小地域의 人文地理」<sup>4)</sup>라 할 수 있으며, 이에는 特定地域의 沿革 軍事, 産業, 交通, 通信, 戶口, 人物, 聚落, 古蹟, 風俗 및 諸般 行政 經濟 社會制度 등이 總網羅되어 있다.

따라서 邑誌란 特定地域의 空間的, 時間的인 諸般事項을 要目別로 記錄한 冊이다. 이러한 연유로 朝鮮王朝의 後半期에 들어서면서부터는 邑誌가 地方行政에 不可缺한 便覽이요, 事例集으로서의 性格까지 兼備하게 되었음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高宗年間に 成冊된 邑誌의 編纂過程에서 미리 밝힌바 있으므로 再論하지 않겠거니와 邑誌가 當時의 重要的 政策資料로서 作成하였던 것만은 틀림없는 事實이다.

## V. 邑誌의 活用方案

邑誌는 그 邑의 地志인 同時에 資料集으로서 그 地域史 및 그 地方固有의 制度的, 社會構造의 側面을 研究하는데 必須不可缺의 史料가 되는 것이다. 特히 여러차례의 兵亂으로 重要的 史料가 많이 逸失된 오늘에 이르러서는 邑誌의 史料의 價値가 더욱 높히 評價된다. 邑誌는 古書로서 自體가 가지는 文化財의 價値로 매우 크게 評價하여야 할 것이다. 거듭 強調하거니와 邑誌는 그 當時 諸邑의 資料가 많이 收錄되어 있기 때문에 그 資料를 整理해서 어떻게 活用하느냐 하는 것이 本章에

4) 金奘星, 人文地理學, 法文社, 서울, 1971.

서 意圖한 重要目的이며, 또 個個邑誌는 局部的인 資料에 不過하므로 全般的인 制度나 現況을 把握하려면 諸邑誌의 共時的 資料를 綜合 分析하는 過程에서 實際的인 活用方案이 提示될 것이다. 몇가지 側面에서 邑誌의 活用方案을 提示하고자 한다.

#### A. 經濟的 側面

첫째, 戶口, 聚落의 分布, 耕地面積, 產物, 水利施設, 漕運, 道路, 各種產物의 集結地 등에 對한 資料는 產業發達史 研究에 貴重資料가 되며, 둘째, 田制, 稅制, 還穀, 會付, 糶糶 등의 資料는 經濟制度史 研究을 可能케 한다.

#### B. 地方行政制度史의 側面

첫째, 建置沿革, 管割區域의 離屬, 邑治의 移轉, 公廨의 所在, 地方行政機構 및 組織, 地方官의 職種·品階·定員·年間用下·經費調達方法, 各種雜項金 등은 地方行政史의 研究에 活用될 것이며,

둘째, 行政事例의 研究資料를 特舉할 수 있다. 特히 先生案의 體系的인 研究와 整理는 地方行政發達史 研究과 人名研究에 必須的인 資料가 된다.

#### C. 地方教育制度史의 研究

첫째, 鄉校, 書院, 祠宇의 分布現況·設置經緯·享祀人物·法制 및 節目 등으로 教育의 規模와 教育程度를 알 수 있으며, 特히 學田, 學位田 등으로 教育財源의 背景을 엿 볼 수 있다.

#### D. 軍制史의 側面

軍役對象者의 規模, 正軍 및 保人의 數와 構成比率, 陸守軍과 船軍의 地方組織, 良賤의 傭役關係, 軍經費의 充當方法 등으로 軍制와 軍事力을 把握할 수 있다.

#### E. 交通·通信史의 側面

道路, 漕運, 烽燧, 驛院, 水路, 橋梁, 津渡 등은 當時의 交通路 및 通信手段 등의 研究資料가 된다.

## F. 語文學的 側面

地名과 關聯되는 神話, 傳說的 集大成이 可能하며, 地名을 통해서 上古語의 再構가 可能하며, 碑·碣 등의 記文과 題詠 등은 諸般 語文學 研究資料가 된다.

## G. 文化財의 總整理

邑址, 城址 등과 山城, 形勝 등의 歷史的 自然的 記念物과 宮室, 行宮, 陵園 등의 建造物과 書板, 冊板, 墓誌銘 등 書跡, 金石文은 書誌研究資料가 된다.

## H. 書誌的 側面

坊刻本の 刊地를 究明하는데 不可缺의 資料이며, 冊板의 分布狀況으로 各地方別 또는 國家的인 著述活動의 究明에 좋은 資料가 된다.

## VI. 結 論

以上에서 朝鮮王朝의 重要官撰地志 編纂經緯를 考察하고, 그것이 邑誌編纂에 미친 影響을 究明함과 아울러, 邑誌의 編纂經緯·重要內容 및 活用方案을 講究하여 보았거니와 이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A. 朝鮮王朝의 重要官撰地志의 編纂經緯를 重要地志의 編纂事業 中心으로 살펴보면, 4段階로 區分 考察할 수 있다. 卽 慶尙道地理志에서 世宗實錄地理志가 完成된 때 까지를 第1段階(1424~1454), 八道地理志에서 新增東國輿地勝覽이 印刊된 때 까지를 第2段階(1455~1531), 東國文獻備考에서 增補文獻備考가 出刊되기 까지를 第3段階(1769~1908), 高宗朝의 大대의인 邑誌編纂作業을 第4段階라 各各 區分할 수 있다.

B. 一國의 總志는 各地方 資料를 蒐集 整理한 것이며, 一次的으로 各郡邑誌를 作成 轉上하여 道志를 編輯하고 道志를 모아 總志가 成編되었음을 밝혔다.

C. 邑誌의 編纂經緯를 살펴본 바,

첫째, 現存資料와 文獻記錄의 包括인 涉獵으로 邑誌가 集中的으로 編纂된 年度를 把握해서 이를 區分한 다음 各各 該段階에 있어서의 編纂經緯와 特徵을 究明하였으며,

둘째, 時代別에 있어서는 調査對象 邑誌 1,637種이 모두 壬亂以後의 것으로서 英祖朝까지의 것이 3.5%, 正祖朝의 것이 1.3%, 高宗朝의 것이 40%, 年紀未詳이 50%임을 밝힘과 同時에 特히 高宗朝, 光武年間의 것이 많이 傳存되고 있음을 알아냈다. 이 當時 大體적으로 邑誌를 編纂한 動機는 急變하는 情勢에 對備하기 爲한 地方行政의 實情把握과 地方 職制의 大體적인 改革으로 因한 것임을 究明하였으며,

셋째, 地域別에 있어서는 湖南, 嶺南의 차례로 邑誌가 傳存하고 있음을 밝혔고, 이는 該地域이 宏濶하여 郡縣의 數가 많고 他地方에 比해 文運이 振作된 데에 基因하였음을 究明하였고,

넷째, 邑誌는 官撰이 大部分이며, 私撰이라 할지라도 大體로 撰者가 公職中에 在한 것이므로 邑誌는 官撰의 性格을 띤 것이라고 究明했으며

다섯째, 邑誌編纂의 體例에 있어서 英祖, 正祖 때의 것은 輿地勝覽 體例를 본 딴 것이고, 高宗朝의 것은 事例中心으로 엮였음이 그 特徵임을 밝혔고,

여섯째, 邑誌에 彩色地圖가 添附된 것은 英祖朝 所纂의 邑誌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以後의 邑誌에도 例外없이 彩色地圖가 添附되어 있음을 또한 究明하였다.

D. 邑誌의 重要內容을 뽑아 分析的으로 考察하여 歷史, 地理는 勿論 諸分野에 걸친 活用方案을 具體的으로 提示하였다.

끝으로 新撰八道地理, 八道地理志 및 이에 隨伴하여 作成된 壬亂以前의 邑誌를 찾아내지 못한 점, 高宗初 및 同 32年の 邑誌編纂動機를 記錄에서 찾아 究明하지 못한 점, 50%나 되는 年紀未詳 邑誌에 對하여 編年을 밝히지 못한 점 등은 時間의 제약으로 부득이 후일의 과제로 미루어둘을 添言한다.

## A Study on the Eubji(邑誌) in the Yi Dynasty

—Based upon the existing Eubjis—

by Chun-bae Kim

A. The principal geographical descriptions compiled by the government during Yi dynasty started from the Shinchon-Paldo-Chiriji(新撰八道地理志) which was compiled by the royal decree in the sixth year (1424) of King Sejong(世宗) and it ended in the Jungbo-Munhonbiko(增補文獻備考) which was published in the second year (1908) of Yunghyi(隆熙). The process of their compilations can be divided into four steps according to the compilatory work's contents of the principal geographical descriptions which were compiled through the Yi dynasty. We can say that the first step (1424—1454) of those works began at the date of the compilation of the Shinchon-Paldochiriji and it ended in the date of the compilation of the "Sejongsilok-Chiriji" (世宗實錄地理志), and during that period the Kyonsangdo-Chiriji(慶尙道地理志) was published. In the second step(1455—1531), were published the Paldochiriji,(八道地理志), Kyongsangdosokchanchiriji(慶尙道續撰地理志), Dongguk-Yojisungnam(東國輿地勝覽) and the third step (1532—1769) began at the date of the compilation of the Dongguk-Munhonbiko(東國文獻備考) and it ended in the date of the publication of the Jungbo-Munhonbiko(增補文獻備考), and in that period the Jongjung-Munhonbiko(訂增文獻備備) was published. The works of compilation of the Eubjis in the period of King Kojong(高宗) came within

the category of the fourth step.

B. Generally speaking, the state geographical descriptions were composed of the regional data of the country which were collected and arranged. In other words, firstly, the Eubjis were compiled in each county, secondly, the Dojis(誌道) were compiled based upon the collections of all the Kunjis(郡誌), lastly, the government collected all the Dojis and compiled them into the state geographical descriptions. The Eubjis in the early days of Yi dynasty were compiled as the data for the compilation of the nation-wide geographical descriptions, but the Eubjis in the age of King Kojong were compiled as the administrative data.

C. The main contents of the Eubjis were composed of the descriptions on the geography, history, industry, naval and military affairs, traffics, communication, administration, economy and society, and of the matters on the prose and poetry, persons of loyalty, historic remains, social customs and schools. Consequently, the above-mentioned data will be contributed to the study on the structures of the geography, history, economy, administration, education, naval and military affairs and traffics as well as the study on the literature, social customs and bibliography. Especially, they will be important data for the arrangement of cultural assets of our country.

Furthermore, because the traditional study of national literature was centered around the study on the central government ignoring the study on the regional matters, the study of the Eubjis will be worthy of being valued.